

의안번호	2200933
의 퇴 인	김희정의원
회 답 일	2024. 8.20.
추계번호	24D11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60세 이상 보국수훈자¹⁾에게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336억원, 2029년 2,064 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총 8,408억원(연평균 1,682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보훈영예수당 (안 제16조의3 신설)	1,336	1,491	1,663	1,854	2,064	8,408	1,6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3(보훈영예수당)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는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 이 경우 60세 이상인 보국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 제73조 및 제7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	의무규정

- 1) 이 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에 따라 보훈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함(제1항) 보훈영예수당은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2개 이상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보국훈장을 기준으로 함(제2항) 보훈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조의3(보훈영예수당)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서 보훈영예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국가보훈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무공수훈자²⁾가 지급받는 무공영예수당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³⁾
- 안 부칙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2) 이 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3) 무공수훈자는 전시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전투나 전투에 준하는 작전을 수행한 분들이 무공훈장을 받는 경우이며, 보국수훈자는 전시상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국가를 위한 공로의 개념으로 보국훈장을 수여받고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훈영예수당(안 제11조, 제16조의3)

- 개정안에 따라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가재정소요는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수에 보훈영예수당 지급액을 곱하여 산출함
 - (대상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수는 2023년 기준 34,411명이고, 최근 5년간 증가율 4.3%⁴⁾를 적용하여 추정한 후 이들 중 보상금 수령자를 차감한 후, 여기에 등급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등급별 연도별 대상자를 추정함
 - (보상금 등 수령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대상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측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금 전망(2019)』에서 추정한 전망치를 적용하며⁵⁾,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전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2023년 기준 123,364명)에 대하여 통계청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증가율을 적용⁶⁾
 - 개정안에서는 보훈영예수당과 보상금이나 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병급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전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훈영예수당은 무공영예수당의 70%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33.6만원~35만원), 보상금(최저 42.6만원)이나 참전명예수당(42만원) 보다는 금액이 작으므로 현재 보상금이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보훈영예수당을 선택하지 않고 기존 보상금 등을 계속 수령한다고 보아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수에서 보상금 등 수령자를 차감하여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를 추정

4) 60세 이상 보국수훈자는 2019년 29,093명, 2020년 30,659명, 2021년 31,947명, 2022년 33,313명, 2023년 34,411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4.3%임

5) 국가유공자 증가율: 2025년 -0.1%, 2026년 0.1%, 2027년 0.2%, 2028년 0.4%, 2029년 0.5%
보훈보상대상자 증가율: 2025년 7.3%, 2026년 6.7%, 2027년 6.1%, 2028년 5.6%, 2029년 5.2%

6)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율: 2025년 -8.3%, 2026년 -8.3%, 2027년 -8.4%, 2028년 -8.4%, 2029년 -8.5%

[표 2]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현황: 2023년 기준

(단위: 명, %)

	1등급(통일장)	2등급(국선장)	3등급(천수장)	4등급(삼일장)	5등급(광복장)	합계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43	158	1,946	9,238	23,026	34,411
등급별 구성비(%)	0.1	0.5	5.7	26.8	66.9	100.0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3]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중 보상금 등 수령자 및 지원단가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명, 천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당 보상금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2호 해당 보상금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해당 지급대상자	합계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2,379	97	2,135	4,611
지급단가	3,681~608	2,577~426	420	-

[표 4]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중 보상금등 대상자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국가유공자	2,376	2,378	2,384	2,393	2,405
보훈보상대상자	104	111	118	124	131
참전명예수당	1,957	1,795	1,645	1,506	1,378
합 계	4,438	4,284	4,146	4,024	3,913

[표 5] 개정안에 따른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60세 이상 보국수훈자(A)	37,424	39,028	40,701	42,446	44,265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중 보상금 수령자(B)	4,438	4,284	4,146	4,024	3,913
대상자(A-B)	32,986	34,744	36,555	38,422	40,352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6] 보훈영예수당 등급별 대상자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등급별 구성비(%)	2025	2026	2027	2028	2029
대상자	100.0	32,986	34,744	36,555	38,422	40,352
1등급	0.1	41	43	46	48	50
2등급	0.5	151	160	168	176	185
3등급	5.7	1,865	1,965	2,067	2,173	2,282
4등급	26.8	8,856	9,328	9,814	10,315	10,833
5등급	66.9	22,073	23,249	24,460	25,710	27,001

- (지원단가) 보훈영예수당 월액은 국가보훈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무공영예수당의 70% 수준으로 가정하며, 최근 5년간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의 연평균증가율 6.0%를 곱하여 추정함

[표 7] 지원단가 추정

(단위: 천원)

무공영예수당 (현행)	등급	1등급 (태극)	2등급 (을지)	3등급 (충무)	4등급 (화랑)	5등급 (인현)
	단가(A)	500	495	490	485	480
보훈영예수당 (추정)	등급	1등급 (통일장)	2등급 (국선장)	3등급 (천수장)	4등급 (삼일장)	5등급 (광복장)
	단가(B=A×70%)	350	347	343	340	336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추가재정소요) 등급별 대상자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계한 결과는 향후 5년간 8,408억원으로 추정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대상자 (A, 명)	1등급	41	43	46	48	50	
	2등급	151	160	168	176	185	
	3등급	1,865	1,965	2,067	2,173	2,282	
	4등급	8,856	9,328	9,814	10,315	10,833	
	5등급	22,073	23,249	24,460	25,710	27,001	

지원단가 (B, 천원)	1등급	350	371	393	417	442	
	2등급	347	367	389	413	438	
	3등급	343	364	385	409	433	
	4등급	340	360	382	405	429	
	5등급	336	356	378	400	424	
소요비용(A×B, 백만원)		133,556	149,134	166,341	185,353	206,370	840,755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